

경기도교육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계약제교원 채용 시 공고기간 미준수 및 교원 인사자문위원회 미개최

관계기관 양일초등학교

내 용

「2022학년도 경기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교원 채용 시 채용 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공개로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이 되도록 하고 있고,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양일초등학교에서는 계약제교원 채용 공고 관련 내부결재를 실시하지 않았고, 일부 교원의 경우 채용 공고 기간(공고게시일 제외 3일 이상 공고)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2022학년도 기간제 교원 채용 시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양일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1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양일초등학교

내 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1조(회의소집 등), 제14조(회의 공개원칙),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양일초등학교에서는 금번 학교 종합감사 대상기간 중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 (1)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지 않은 건이 2020년 2건, 2022년 2건이 있으며,
- (2)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회의 개최 전에 홈페이지에 2020년 5건, 2021년 2건, 2022년 5건을 공개하지 않았고
- (3)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2020년 5건 미공개, 2021년 1건 미공개, 4건 공개지연, 2022년 4건 공개지연한 사실이 있다.
- (4) 또한, 2022학년도 회의록에 학교장 및 위원장의 서명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양일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3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복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 양일초등학교

내 용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은 해당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복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복무별 관련 규정 및 처리지침은 아래와 같다.

1. 가족돌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특수운영직군 포함) 복무제도 안내」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2일 이내 유급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포함)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 병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제18조(병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5(병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병가일수가 연속 7일 또는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5조,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포함) 복무제도 안내」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은 연속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병가 누계가 10일 초과할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일반 병가는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공무상 병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 따르면 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라 한다.

4.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조,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5조,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포함) 복무제도 안내」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특별휴가 사용 시 사용 목적과 관련된 자료로 증빙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양일초등학교에서는 교사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들의 복무와 관련하여 가족 돌봄휴가(유급), 연속 7일이상 6일 초과하여 사용하는 병가, 특별휴가 사용 시 증빙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승인하여 복무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실이 있고, 공무상 병가 사유가 아님에도 공무상 병가를 승인하였다.

또한, 교사 ○○○외 1명은 병가를 60일을 초과 사용한 사실이 있고, 교육공무직원 ○○○는 별도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없이 10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양일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양일초등학교에 ‘기관주의’ 처분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발전기금 운영·관리 소홀

관계기관 양일초등학교

내 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학교발전기금)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로 조성한다고 되어있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2020,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세부적인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요령에 따르면 발전기금회계 처리는 K-에듀과인시스템을 사용하며, 이에따라 작성된 접수대장은 준영구 서류로 보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양일초등학교에서는 2020년 6월, 10월 두 건의 발전기금 접수건에 대해서 발전기금접수 대장에 출납원과 출납관의 날인 결재를 받지 않고 접수대장을 관리한 사실이 있다.

연번	접수일자	기탁자성명	기탁내역	금액
1	2020.6.12.	(주)○○○	물품	2,730,000
2	2020.10.23.	사단법인 ○○○○○ ○○○○○ ○○○○○	도서	970,200

【조치할 사항】

- ① 양일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1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